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8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고성군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보건소의 위치변경(안 별표 1)

· 고성읍 성내리 72-42 → 고성읍 대독리 4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써 고성군 보건소의 위치를 당초 고성읍 성내리 72의 42번지에서 고성읍 대독리 4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3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